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1. 제정이유

○ 각종 법령 제·개정으로 도입된 다양한 유형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함 (안 제4조)
- O 재판장등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당사 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등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음(안 제6조)
- O 재판장등은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출석장소를 지정하고, 필요 한 경우 신문기일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 문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계시설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이나 모 사 전송,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5조)
- 중계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문을 중단하되, 장애사유 해소 후 필요한 경우 종전 신문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음(안 제16 조)
- O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되, 전자패드 서명 또는 전자문서 변환 방법으로 서류 송부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18조)

- O 수소법원 형사법정에 중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 O 감정인등에 대하여 서류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감정료와 함께 지급함(안 제33조)
- O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의 의사는 서 면으로 확인하되, 기일에서는 구두로 확인할 수 있음(안 제36조)
- O 재판장등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준비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차회 기일에 고지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안 제38조)

3.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붙임과 같음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원격영상재판(이하 "영상재판"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 2. "영상신문"이라 함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문절차를 말한다.
- 3. "중계시설"이라 함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 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4. "화상장치"라 함은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5.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 6. "출석장소"라 함은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재판관계인이 실제로 출석하는 장소를 말한다.

- 7. "출석법원"이라 함은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 8.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 제3조(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신문실, 증언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부배할 수 있다.
- 제4조(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과 관련 설비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제1절 민사사건

- 제5조(적용범위) 이 절은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03조의2에 따른 중계 시설을 통한 신문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 제6조(의견청취) ①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서설명담당자(민사소송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이하 일괄하여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 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영상신문 실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증인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영상신문 결정) ① 증인등에 대한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A1820]과 같다.
 - ② 기일에서 영상신문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재판장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는 결정 고지

③ 기일에서 영상신문 실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재판장

증인 000에 대한 영상신문 실시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 고지

- 제8조(촉탁서의 송부 등) ① 재판장등은 영상신문의 협조를 요청하는 촉탁 서[전산양식 A1822]를 작성하여 출석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법원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출석법원에 촉탁취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영상신문 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영상신 문 진행상황부[전산양식 A1825]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장소의 지정) ① 재판장등은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증인 등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으로 출석법원을 정한 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 당자의 의견을 들어 호실 등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한다.
 - ② 증인등의 거동이 곤란하거나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증인등의 거소를 출석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증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기일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요구서 등의 송달) ① 출석요구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81조제1 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구체적 인 장소를 적어야 한다.
 - ② 증인등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 식 A1823]을 함께 송부한다.
- 제11조(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①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수소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중계시설 및 각종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와 협의하여 영상 신문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석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①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출석장소의 중계시설 및 각종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선서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여비 영수증 등 신문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제13조(인적사항 확인) ① 영상신문 전 증인등의 동의를 얻어 중계시설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증인등이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1. 재판부에만 신분증 영상이 송수신되게 하는 방법
 - 2. 생년월일 이외의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게 하는 방법
 - 3.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로 하여금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 제14조(선서) 증인등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15조(문서 제시) ① 문서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계 시설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다.
 - ② 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사 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제시하되, 영상재판담당자가 관리하는 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장애 발생의 경우) ① 중계시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문을 중단하고 장애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등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신문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여비 등의 계산 및 지급) ①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출석장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 ②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에 따른다.
- 제18조(서류 송부) ①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선서서, 영수증 등 서류에 대하여 증인등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류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수소법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받은 서류는 출석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따라 가보존한다.
- 제19조(조서 작성) 영상신문을 실시한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증인등이 실제 출석한 장소 및 방식을 기재한다.

(예시)

20 가		○ ○ 증 인 :	법 등 목	원 록		
원고	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				
기일 및 장 수	증 거 방 법	증거	결정	증거조사	ار جا	비고
		기 일	채 부		<기재례>	
1차	증인 OOO	1차	ᆥ 부	20 . 4. 28. 14:00		OO지방법원 제O호
1						의 비디오 등 중계장 치에 의한 중계시설
장					(= 1)	을 통해 신문

2차 장	감정증인 OOO	2차	채 부	20 . 5. 20. 14:00 (실시)	OO시 OO구 OO로 123에서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신문
3차 장	감정 (측량)	3차	㈜ 부	┃20 . 7. 5. 10:00(실시)	감정인 사무실(OO 시 OO구 OO로 345)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

제20조(녹음물의 처리) 영상신문을 마친 후의 녹음물 보관에 관하여는 변론 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2절 형사사건

- 제21조(적용범위) 이 절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 제22조(의견청취) ①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소법원 외의 장소에 설치된 증언실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재판장등은 증언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인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제23조(수소법원 법정) 수소법원에 중계시설이 설치된 형사법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하여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출석장소의 지정) 증인의 출석장소로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출석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증언실을 지정하되, 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중계시설이 설치된 법정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 증언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5조(선서)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선서서를 증인등에게 제시한 상태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26조(문서 제시) 진정성립의 증명 등을 위해 문서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물화상기와 연결된 중계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로 하여금 사전에 필요한 문서의 사본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에게 송부하게 할 수있다.
- 제27조(준용규정) 형사사건의 영상신문에 관하여는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신문

- 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은 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신문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 제29조(화상장치 이용 방식의 활성화)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서설명담당자 (이하 '감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상신문에는 화상장치를 이용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30조(결정 방식 등) ① 감정인등에 대한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신문 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A1820-1]과 같다.
 - ② 기일에서 영상신문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재판장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 OOO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는 결정 고지

- ③ 감정인등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 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한다.
- 제31조(출석장소의 지정) ① 재판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정인등 의 희망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한다.
 - ② 감정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기일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2조(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①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영상신문 도중의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감정인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야 한다.
 - ②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감정인등과 협의하여 영상신문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33조(서류 작성 및 송부) ① 선서서 등 감정인등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양식을 전송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 ② 감정인등에 대하여 전항 기재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감정료와 함께 지급한다.
- 제34조(준용규정)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신문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에 관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2장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민사소송규칙 제70조제6항에 따른 변론준비기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 제36조(동의 의사 확인) ①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구두로 확인할 수 있다.
 - ② 서면 확인의 경우 [전산양식 A1821-1]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한다.
- 제37조(기일통지 등) ①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의 기일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1826]과 같다.
 - ②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기재 방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〇 법 원

변론준비기일 조서

()차

사 건 20 가단○○○ 기 일 20 . . . : (영상재판)

판 사 장 소 제 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 개

고 지 된

다음기일 20 . . : (영상재판)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소송대리인

출석

피고 소송대리인

출석

이 절차는(또는 이 절차 중 ○○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규칙 제70조제6항 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제38조 (주요사항의 요지 고지)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화상장치를 이용한 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종전 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6조, 제2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1820